

서울교육대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예비교사 및 현장 교원의 개별맞춤형교육 역량 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다양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별맞춤형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대'와 '교육청'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상호협력 분야) '서울교대'와 '교육청'은 아래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예비교사의 개별맞춤형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2.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 개별맞춤형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3. 개별맞춤형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자료 공유
4. 기타 양 기관에서 상호 발전에 필요한 협의 사항

제4조(상호협약) 각 기관은 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고, 이외의 일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교육 내용, 참여자 정보, 결과 보고서, 이 협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상, 업무상 정보, 기타 정보 등(이하 '비공개 정보')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비공개 정보를 제3자 또는 외부에 공개, 제공, 누설, 유출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